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860호 2014년 5월 19일(월)

조 례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4

공 고

- 2014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8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9일

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함 재 석 인

속초시 조례 제2371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속초시 지역주민”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로 하고, “발급 받아”를 “발급받아”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등록 되어있는”을 “등록되어 있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사업용(영업용을 포함한다) 및 임차차량”을 “임차차량”으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에서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인 2014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

◇ 개정이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에게 지원(강원도 : 속초시 = 50 : 50)되고 있는 통행료의 지원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용(영업용을 포함) 차량을 비롯해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원의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19일

속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함 재 석 인

속초시 조례 제2372호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안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속초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 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 10m 이내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 특화거리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을 속초시보 및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비상구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자격, 위촉기간, 직무범위 및 교육, 해촉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횡수에 상관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014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9.

속 초 시 장

① 지원근거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②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규모)

- 예산액 : 금일십일억일천일백만원(W1,111,000,000)
- 신규 지원신청 중소기업 지원예산: 138백만원(※융자추천 금액 기준 100억원 내외)
- 계속지원 중소기업 지원예산 : 973백만원

나. 융자지원 한도 :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

- 제조업체 3억원 이내, 비제조업체 7천만원 이내
-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융자한도는 [별표 1] 참조

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고, 속초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라.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및 이차보전금 지급일 현재 기준]

-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②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③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⑤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⑥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 ⑦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사업체(별표 2. 참조)

마. 융자조건

- ①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② 융자기간 : 2년(※단 1년 연장신청 가능하며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바. 지원방법 :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3%를 이차보전

③ 융자 금융기관

- 가. 제1금융권 : 국민은행 속초지점, 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신한은행 속초금융센터, 우리은행 속초지점, 중소기업은행 속초지점, 속초농업협동조합, 속초양양축협조양지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대포수산업협동조합
- 나. 제2금융권 : 속초신용협동조합, 속초북부·동명·속초중앙·속초남부·청호·장사동새마을금고

④ 신청기간

- 2014. 5. 26. ~ 2014. 12. 31. (※ 신규신청 지원 자금 소진 시, 접수 중단)

⑤ 대출기한

- 속초시의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기한경과 시 융자 불가)

⑥ 처리절차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상담(협약 금융기관 대출추천) ⇒ 속초시청(희망일자리추진과)에 신청 ⇒ 융자추천 심사 및 결정(속초시) ⇒ 금융기관 및 업체 통보(속초시)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실행(업체) ⇒ 분기별 이차보전금 교부 신청(협약은행 → 속초시) ⇒ 이차보전금 지급

7 접수처

-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제노정팀, ☎ 639-2352)

8 구비서류

- 가.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1부(기재사항, 대출추천액, 금융기관장의 인 날인사항 확인)
- 나. 융자추천 신청서 1부(시청 접수처 비치)
- 다. 사업계획서 1부(시청 접수처 비치)
- 라.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속초세무서 발급)
-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지참

9 선정 및 추천방법

- 신청업체 적격여부 검토 후 융자대상 업체 선정,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및 업체 통보

10 사후관리

-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자금대출 3개월 이내에 속초시에 융자금 사용 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사용 내역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소정의 기간 동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속초시의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자금지원을 받은 후 융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하며, 자금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됨.

11 기타 문의사항

-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경제노정팀, ☎ 639-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조례 제3조 관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기업	- 우선 지원대상(제조업중) - 수출상품 생산업체 -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 특별 지원대상 - 설악산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 기타 지원대상 -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용 도	시설 및 운전자금
용 자 한 도	- 우선 지원대상(제조업) : 3억원 이내 -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 이내 추가 가능 - 특별 지원대상 : 5억원 이내 (용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용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기존 은행용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 - 신규 은행용자액 범위 안(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 - 기타 지원대상(비제조업) : 7천만원 이내 -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3천만원 이하의 신청건은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추천 가능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참조) -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이내 추가 가능
지 원 조 건	<u>금리 : 은행 대출금리 중 3%를 이차보전</u> <u>이차보전 기간 : 용자일로부터 2년간</u> ※ 기간연장 : 1년간 연장가능(단, 만료일 이전 신청분에 한함.)

[별표 2]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5621	주점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및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8550, 85620	일반 교습 학원(8550), 예술학원(85620)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신청서

1. 상호명 : (사업장 : 033-)
2. 소재지 : (휴대폰 :)
3. 대표자 :
4. 사업자등록번호 :
5. 법인등록번호(법인일 경우 기재) :
6. 업체현황

업 태		업 종	
취급품 (생산품)	주요품목 : 매 출 액 :	종사자	생산직 : 명(남,여) 사무직 : 명(남,여) 계 : 명(남,여)
자 본	자기자본 : 타인자본 : 계 :	수출액	2012년 : 2013년 :

7. 융자 신청액 : 금 원(₩)
8. 융자 희망 금융기관명 : _____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오니, 위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③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확인서(증명서) 1부
④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2014년 **총** 일
대 표 자 :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속초시장 귀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계획서

1. 사업기간 : 2014년 월부터 2016년 월까지

2. 사업개요 (해당란에 “○”) : 사업체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사업개요)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자금산출 증빙자료 첨부)

사업명(자금사용목적)	수 량	금 액	비 고
원자재(재료) 구입비		금 원	
인건비		금 원	
시설자금		금 원	
기타 운전자금		금 원	

4. 소요자금 조달방법

계	자기자본	융 자	사 채	기 타
금 원	금 원	금 원		

5.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불

6. 기존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현황 : 기 대출(), 미대출()

- 대출일자 :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
- 대출 금융기관명 :
- 대출금액 : 금 원(₩)

7. 융자금 대출방법 (해당란에 “○”)

- ① 부동산담보 대출 [] ② 은행신용 대출 []
- ③ 신용보증 대출 [신용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주생산품	
사업장주소	(☎)		
주 소 지	(☎)		

2. 대출계획

대출신청방법	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신용보증서
신 청 금 액	금 원정(₩)
용 도	운전자금 (사업체 경영자금/시설투자자금)
대출가능금액	금 원정(₩)
대출방법결정	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신용보증서
비 고	

상기 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대상 업체로 추천합니다.

2014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인)

답 당 자 : (인)

「2014년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1.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내용

- 융자금조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내용 : 연리 3% 이차보전 2년(1년 연장가능, 단 기간만료 전까지 신청분에 한함)

2. 처리절차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상담(협약 금융기관 대출추천) ⇒ 속초시청(희망일자리추진과)에 신청 ⇒ 융자금추천 심사 및 결정(속초시) ⇒ 금융기관 및 업체 통보(속초시)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실행(업체) ⇒ 분기별 이차보전금 교부 신청(협약은행 → 속초시) ⇒ 이차보전금 지급

3. 융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 융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자금대출 3개월 이내에 속초시에 융자금 사용 내역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 사용 내역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기간 동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속초시의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지원을 받은 후 융자 제외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하며, 자금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체”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이 불가하며, 이차보전금 지급 이후에 휴폐업체로 사후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대출만기일 전까지 속초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연장 불가.
-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후 사업내용(상호, 사업장주소, 업종변경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